

	교육역량중점교원에관한규정	규정번호	3-2-23
		제정일자	2022.12.01
		개정일자	2026.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교육역량중점교원의 자격과 임용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육역량중점교원이라 함은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교원으로서, 학생지도 및 교과목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교육역량중점교원은 본 대학 설립헌장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교육기관, 관련 산업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4조(직위) 교육역량중점교원의 직위는 교육역량중점조교수로 임용한다.

제5조(임용절차) 교육역량중점교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용기간 및 재계약임용) ① 교육역량중점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임용심사기준에 의한 심사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② 교육역량중점교원이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기말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임용계약)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연봉금액
3. 기타 계약조건(사학연금, 건강보험적용, 각종 세액공제 등)

제8조(의무) ① 교육역량중점교원은 학과에 소속되어 주 3일 이상 근무, 주당 12시간 이상의 강의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1.)

② 학생 지도는 지도학생 배정 및 상담, 취업지도, 학과 회의 참여 등 학생 지원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포함한다.(개정 2026.03.01.)

③ 교육역량중점교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타대학에서 강의를 가능하다.

④ 교육역량중점교원은 전체교수회의 및 공식적인 학교행사 참여에서 제외된다. 다만, 총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신분보장 등) ① 교육역량중점교원은 계약기간 중 재임용 평가의 탈락,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인 정관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학과의 개폐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역량중점교원에 대하여는 연구실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휴직) 교육역량중점교원은 계약기간 중 휴직을 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민학원 정관 및 본 대학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